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2023.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23. 06. 11.)에 따라 평창군 조례안의 조문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문 내용 변경 :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정비 대상 : 20개 부서 61개 조례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4. 5. ~ 2023. 4.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비규제

3)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 1장 행정과 소관

제1조(「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장 올림픽체육과 소관

제5조(「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장 복지정책과 소관

제6조(「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장 가족복지과 소관

제7조(「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조(「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장 세정과 소관

제11조(「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장 인재육성과 소관

제12조(「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장 관광문화과 소관

제15조(「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제2조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한다.

제16조(「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무형 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조(「평창군 전통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전통 민속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조(「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조(「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 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조(「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1조(「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3조(「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의 개정)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의 개정) 평창군 문화예술·지역문화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장 허가과 소관

제26조(「평창군 건축 조례」의 개정)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15조의5 중 “강원도”를 각각 “강

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장 경제과 소관

제27조(「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4호 및 제33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28조(「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9조(「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0장 환경과 소관

제30조(「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장 산림과 소관

제32조(「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을 “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3조(「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장 안전교통과 소관

제34조(「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6조(「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7조(「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8조(「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0조(「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1조(「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장 도시과 소관

제42조(「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

례」의 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3호 및 제19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3조(「평창군 군계획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1조 및 제61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4조(「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5조(「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6조(「평창군 경관조례」의 개정)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조(「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주민안전보호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8조(「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의 개정) 평창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장 의회사무과 소관

제49조(「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장 보건정책과 소관

제50조(「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1조(「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평창군 식품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장 건강증진과 소관

제52조(「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금연지
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7장 농정과 소관

제53조(「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8장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54조(「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5조(「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6조(「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7조(「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나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9장 기술지원과 소관

제58조(「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의 개정)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0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60조(「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1조(「평창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의 개정) 평창

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설치) ① (생략)</p> <p>② 센터의 위치는 <u>강원도</u> 평창군 평창읍 여만길 46에 둔다.</p> <p>제14조(설치)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u>강원도</u>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에 둔다.</p>	<p>제10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강원특별자치도</u> -----.</p> <p>제14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강원특별자치도</u> -----.</p>

평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협의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수, 평창군의회의장, 평창경찰서장, 강원도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제4조(협의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 <u>강원도</u>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임용절차 등) ① ----- ----- -----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p> <p>1. (생략)</p> <p>2. 국가 또는 <u>강원도의</u>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p> <p>3. ~ 5.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강원특별자치도</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스포츠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치·명칭 및 위치) ① (생략) ② 체험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위치: <u>강원도</u>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 239-1번지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센터 일원	제4조(설치·명칭 및 위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u>강원특별자치도</u> ----- -----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u>강원도</u> 평창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제3조(명칭 및 위치) ----- ----- ----- <u>강원특별자치도</u> ----- <u>도</u> ----- ----- -----.</p> <p>1. 2. (현행과 같음)</p>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위탁관리) ①군수는 노인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u>강원도연합회</u>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하“수탁자”라 하다)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⑦ (생략)</p>	<p>제6조(위탁관리) ①-----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u>강원도</u> 묘지 등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 구역안의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4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 ----- ----- <u>강원특별</u> <u>자치도</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8. 그 밖의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강원도지사,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p> <p>②·③ (생략)</p>	<p>제26조(비용의 보조 등)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 강원특별자치도-----

④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⑤ · ⑥ (현행과 같음)

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군에서 수립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보조계획에 따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u>강원도</u>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매년 예산편성 이전까지 제출받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 ----- ----- ----- <u>강원특별자치</u> <u>도</u>----- ----- ----- ----- ----- ----- -----.</p>

평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지원) 군수는 법 제39조제 2항에 따라 <u>강원도교육청</u> 교육 감이 지정한 문자해득교육 프로 그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u>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u>,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평창군 강원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u></p>	<p><u>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u>강원도 관광재단</u>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강원</u> ----- -----.</p>
<p>제2조(재단의 설립) 재단법인 <u>강원도관광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 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u>강원도 관광산업</u>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재단의 설립) ----- <u>강원</u> -----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평창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관할에 있는 국가 및 <u>강원도</u> 지정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무형문화재”란 국가지정문화재나 <u>강원도지정문화재</u> 중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문화재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 <u>강원특별자치도</u> ----- ----- -----.</p>
<p>2. (생략)</p> <p>제11조(전승지원금) ①·② (생략)</p> <p>③ 국가 또는 <u>강원도</u> 지정문화재로서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을 받는 지원금 등은 국·도비 지원 기준에 따른다.</p>	<p>2. (현행과 같음)</p> <p>제11조(전승지원금)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강원특별자치도</u> ----- ----- -----.</p>

④ (생략)

제13조(준용)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 등에 따른다.

1.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2. ~ 4.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준용) -----

-----.

1. --강원특별자치도 -----

2. ~ 4. (현행과 같음)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치)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은 <u>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문화예술길</u>	제2조(위치) ----- ----- <u>강원특별자치도</u> ----- --

평창군 송어종합공연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치 및 시설) 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평창송어종합공연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은 <u>강원도</u> 평창군 진부면 경강로 3554에 둔다.</p> <p>②·③ (생략)</p>	<p>제2조(위치 및 시설) ① ----- ----- ----- ----- <u>강원특별</u> <u>자치도</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략)</p> <p>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u>강원도</u>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p> <p>4. (생략)</p> <p>5. “문화관광해설사”란 「<u>강원도</u>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p> <p>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강원특별자치도</u>----- -----.</p> <p>4. (현행과 같음)</p> <p>5. -----<u>강원특별자치도</u>----- ----- -----.</p> <p>6. (현행과 같음)</p>

평창군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업) ① (생략)</p> <p>② 재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p> <p>1. 국가, <u>강원도</u> 또는 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사업</p> <p>2. (생략)</p>	<p>제4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2. (현행과 같음)</p>

평창군 문화·관광플랫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명칭·위치 및 시설) ① (생략) ② 센터는 <u>강원도</u>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에 둔다. ③ (생략)	제5조(명칭·위치 및 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 ----- <u>강원특별자치도</u> ----- -----. ③ (현행과 같음)

평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평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u>강원도지사의</u>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p> <p>2.·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p>2.·3. (현행과 같음)</p>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 ⑤ (생략)</p> <p>⑥ 강원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p>	<p>제8조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p>제1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하고 「<u>강원도 건축 조례</u>」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 등재된 건축사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p>	<p>제1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2. ~ 6. (생략)

③ ~ ⑤ (생략)

제15조의5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법 제25조제14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강원도건축사회 평창지역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5 (건축물의 공사감리 비용) -----

-- 강원특별자치도-----

-----.

평창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3. (생략)</p> <p>24. “주력업종”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p> <p>25. ~ 30. (생략)</p> <p>제13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p> <p>제26조(보조금의 분담) ① 군수는</p>	<p>제2조(정의) ----- ----- ----.</p> <p>1. ~ 23. (현행과 같음)</p> <p>24. ----- 강원특별자치도----- -----</p> <p>----.</p> <p>25. ~ 30. (현행과 같음)</p> <p>제13조(국·도비 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원 대상 기업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한다.</p> <p>제26조(보조금의 분담) ① -----</p>

보조금의 예산분담에 대해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하여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군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을 군비로만 부담할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하여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준용) -----

-----강원특별자치도 -----
-----.

마을단위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강원도지사가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라.·마. (생략)

3. ~ 6. (생략)

----- 강원특별자치
도-----.

라.·마.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평창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군수는 생태계보전지역, <u>강원도</u> 관리아생동·식물의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등) -- ----- <u>강원특별</u> <u>자치도</u>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u>강원도</u>관리아생동·식물 및 국내고유생물종의 서식현황</p> <p>4. ~ 6. (생략)</p>	<p>제6조(자연환경 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4. ~ 6. (현행과 같음)</p>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p> <p>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u>강원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강원특별자치도</u>----- -----.</p> <p>④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2015. 05. 15 개정></p> <p>1. 면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군민, <u>강원도명예도민, 출향강원도민</u>, 숙박시설 또는 강당 등 유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p> <p>2. 할인 : 그린카드 소지한 사람, <u>강원도민</u>, 휴양림과 제휴업체 이용객 <2015. 05. 15 개정></p> <p>②·③ (생략)</p>	<p>제7조(입장료 등의 감면) ① ----- ----- ----- ----- -----</p> <p>1. ----- ----- ----- <u>강원특별자치도명예도민, 출향강원특별자치도민</u>----- -----</p> <p>2. ----- <u>강원특별자치도</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4. (생략)</p> <p>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평창군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평창군지부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u>강원도지사</u>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p> <p>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p>6.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훈련) ①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p> <p>1.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u>강원도</u>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한 경우</p> <p>2.·3. (생략)</p>	<p>제5조(교육·훈련)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p> <p>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강원도</u> 또는 인근 시·군 지역 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p>	<p>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p> <p>① -----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강원도 및 다른 시·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생략)

-----.

② ----- 강원특별자치도 -----

-----.

③ (현행과 같음)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 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u>강원도</u>에서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u>강원도</u>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p>	<p>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u>강원특별자치도</u>----- <u>도</u>----- ----- ----- --.</p>

평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② (생략) ③ 본부장은 제2항의 통합지휘 소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운영상황을 중앙 재 난안전대책본부장 및 <u>강원도</u> 재 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p>	<p>제12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강원특별자 치도</u> ----- -----.</p>
<p>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② (생략)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예보 ·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u>강원도</u> 재난안전상황실에 즉시 보고하 여야 한다.</p>	<p>제13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강원특별 자치도</u> ----- -----.</p>
<p>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 려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 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p>	<p>제16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 - ----- ----- ----- -----</p>

및 강원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생 략)

-- 강원특별자치도-----
-----.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 --<u>강원특별자치도</u> ----- ----- -----.</p> <p>②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② (생략)</p> <p>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사정으로 재난에 대한 피해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또는 <u>강원도</u>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3조(지원 및 대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u>강원특별자치도</u>----- -----.</p> <p>④ (현행과 같음)</p>

평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 ①·② (생략)</p> <p>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u>강원도</u>의 관할지역과 인접생활권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등 운행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6조(운행시간 및 지역)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 -----</p> <p>④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통보)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경우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u>강원도</u>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6조(통보)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9조(상황보고) ①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해 <u>강원도지사</u>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3시간 이내에 즉시보고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19조(상황보고) ①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u>강원도</u>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p>
<p>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p> <p>1.·2. (생략)</p> <p>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u>강원도지사</u>와 사전협의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p>	<p>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강원특별자치도</u>----- -----</p>

을 고시하여야 한다.

4.·5. (생략)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① 군수는 영 제20조에 따라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4.·5. (현행과 같음)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위탁 등) ① -----
-----강원특별자치도-----

-----.

② ~ ⑦ (현행과 같음)

<p>는 사항 중 <u>강원도</u>도시계획위원회 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p> <p>2.·3. (생략)</p>	<p>----- <u>강원특별자치도</u>-----</p> <p>-----</p> <p>-----</p> <p>-----</p> <p>-----</p> <p>2.·3. (현행과 같음)</p>
---	--

평창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 5. (생략)</p> <p>6. 국가 또는 <u>강원도</u>로부터의 보조금</p>	<p>제2조(기금의 재원) -----</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강원특별자치도</u>-----</p> <p>-----</p>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개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 및 대상)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p> <p>1. 2. (생략)</p> <p>3. 국가, <u>강원도</u> 또는 군으로부터 신청대상 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지원을 받은 적이 없거나 지원 받은 후 4년이 경과한 사람.</p>	<p>제4조(지원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강원특별자치도</u> -----</p> <p>-----</p> <p>-----</p> <p>-----</p> <p>-----.</p>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p> <p>1. 2. (생략)</p> <p>3. 「<u>강원도 경관형성 조례</u>」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사업</p> <p>4. 삭제</p> <p>5. (생략)</p> <p>② (생략)</p>	<p>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강원특별자치도</u> ----- -----</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① (생략)</p> <p>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법 제 50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보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p> <p>1. 대상사무 외에 국가, 강원도 등의 소관 사무에 대한 건의 사항</p> <p>2. (생략)</p> <p>③·④ (생략)</p>	<p>제14조(결과보고 및 결과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1. ----- 강원특별자치도 ----- --</p> <p>2.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평창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 <u>강원도교육청</u> , 지역 의료기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 ----- ----- <u>강원특별자치도</u> ----- ----- -----.

평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으뜸음식점”이란 모범음식점 중 <u>강원도지사가</u>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p> <p>3.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강원특별자치도</u>----- -----.</p> <p>3. (현행과 같음)</p>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제5조(직무수행의 범위) ① ----- ----- ----- ----- 강원 <u>특별자치도</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지급 대상자가 강원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
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생략)
- ② (생략)

제10조(미지급 및 환수) ① -----

-----.

1. (현행과 같음)
 2. ----- 강원특별자치
도 -----
-- 강원특별자치도-----

 3.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창군 및 <u>강원도</u>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가공· 2.·3. (생략) 	<p>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강원특별자치도</u> ----- ----- ----- 2.·3. (현행과 같음)

평창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재원 및 관리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p>1. 국가, <u>강원도</u> 또는 군의 출연금(연간 10억을 목표로 한다)</p> <p>2. ~ 5. (생략)</p> <p>②·③ (생략)</p>	<p>제6조(재원 및 관리 등) ① ----- ----- --.</p> <p>1.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군수는 <u>강원도</u>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③ (생략)</p>	<p>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① ----- <u>강원특별자치도</u>----- -----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평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2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생략)</p> <p>나. <u>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u>에서 추천한 사람</p> <p>다. ~ 타. (생략)</p> <p>④·⑤ (생략)</p>	<p>제12조(위원회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강원특별자치도</u>----- -----</p> <p>다. ~ 타. (현행과 같음)</p> <p>④·⑤ (현행과 같음)</p>

평창군 향토음식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연구업무의 위탁) ①군수는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u>강원도내</u>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2조(연구업무의 위탁) ①----- ----- ----- --- <u>강원특별자치도</u>-----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제10조(강원자치도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또는 도의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기획실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065